

#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  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욱 의원입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」는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이 구성되어 있어 해석이 명확성이 부족하고,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 등 편의시설 관리체계 또한 일부 미흡한 실정입니다.
- 또한 점검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,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.
-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,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실태조사 및 점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
- 법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,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.

- 아울러 점검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명확히 하고,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구체화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